

35평 같은 25평의 마법, 발코니의 경제학

< Executive Summary >

■ 발코니 면적이 달라 동일 면적 아파트에서도 실 사용면적에 차이

- 아파트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의 합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평형을 가리킬 때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사용
 -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실내 공간의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
- 발코니(=베란다), 테라스, 다락방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 면적은 공급면적과 별도로 주어지며 전용면적과 함께 아파트 거주자가 실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
 - 최근 지어진 25평 아파트는 발코니가 넓어 실 사용면적은 구축 33평에 육박

■ 발코니 규제, 아파트 평면 설계의 변화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점차 확대

- '86년 발코니가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면서 서비스 면적으로 전환, 한편 '88년과 '00년에는 발코니 허용 면적이 추가로 확대
 - '90년대 초 대규모 미분양을 겪은 건설사도 분양성 제고를 위해 발코니 면적을 확대
- 아파트 평면이 2베이에서 3~4베이로 점차 전환되면서 발코니 면적은 더욱 증가
 - 4베이 도입으로 아파트 평면이 가로로 길어지면서 전후면에 배치된 발코니 면적도 증가, 최근에는 아파트 세로를 포함해 3면 또는 4면에 발코니를 배치하는 사례도 등장
-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입면의 다양화를 위해 '08년부터 '발코니 30% 삭제' 규정을 도입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코니 면적이 작은 편
 - 단, 발코니 삭제 규정은 전용 60㎡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

■ 발코니 활용법이 달라 발코니와 집값 사이의 관계는 불분명, 한편 최근 분양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 청약 시 유의할 필요

- 발코니 확장 시 실내 공간이 넓어지지만, 발코니는 화재 대피공간이자 평상 시 외부 소음 및 외풍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확장의 장단점 존재
 - 최근에는 확장없이 발코니를 카페, 서재, 휴식·작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
- 발코니가 넓을수록 아파트의 실 사용공간이 증가하지만, 발코니는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전용면적보다 가치가 낮은 편

- 최근 분양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이며, 확장 비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의 발코니 확장비를 확인할 필요

■ 발코니 면적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나,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

- 발코니 면적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 평면도나 분양계약서 등으로만 확인이 가능
 - 최근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 관련 자료에서 확인 가능
- 다만, 부동산 중개 사이트 아파트 평면도에서 평면 구성, 발코니 형태 등을 확인하여 개략적인 면적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
- 한편, 발코니 활용과 관련한 실생활 정보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의 커뮤니티 정보나 인테리어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여 취득

표 | 발코니 면적 산정 관련 「건축법」 변화

연도	건축법 규정	변화 내용
1973	노대 등의 난간벽 면적이 수직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1971년 발코니 규정이 처음 등장한 이후 아파트 건설 붐이 본격화
1986	외벽으로부터 1.2m 초과 부분에 한해 바닥면적 산입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식화
1988	공동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문구는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산입제외 범위도 1.2→1.5m로 확대
2000	채광방향 벽면 노대 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 2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외부 공간으로서 활용성 확보를 위해 화산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 깊이 1.5→2.0m로 확대
2005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거실, 침실 등으로 확장을 합법화, 비판이 많았던 바닥면적 산입 제외 깊이는 2.0→1.5m로 축소

자료 : 건축공간연구원(2021)

연구위원 손정락 urbang1@hanafn.com

Key Words : 발코니,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I. 집이 넓어 보이는 이유, 발코니

1. 35평 같은 25평의 비결은 서비스 면적

■ 발코니가 포함되는 서비스 면적은 아파트 공급면적에 비 포함

- 아파트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기타공용면적(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구성
 - 아파트 평형을 산정할 때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만을 합한 공급면적을 사용¹⁾
- 한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과 함께 아파트 거주자가 실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구성
 - 발코니 폭이 1.5m를 넘으면 초과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

■ 동일 평형이라도 서비스 면적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크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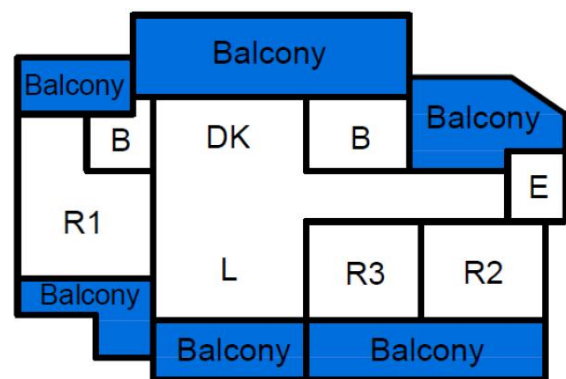
-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발코니 면적에 따라 동일 평형이라도 실내 면적에 차이가 발생
 - '00년 이전 지어진 전용 59㎡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6평 이하지만 최근 준공된 동일 평형에서는 12평²⁾에 이르면서 실내 공간이 전용면적 84㎡ 구축 아파트에 육박

그림1 | 용산 한강맨션 평면도



주 : 1971년 준공, 전용 88㎡ 기준
자료 : 김선영, 오찬옥(2012), p.154

그림2 | 김포 반도유보라2차 평면도



주 : 2013년 준공, 전용 59㎡ 기준
자료 : 건축공간연구원(2021),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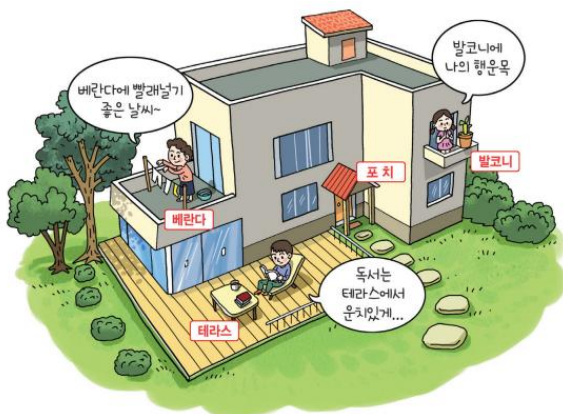
1) 반면, 오피스텔 평형을 가리킬 때는 계약면적을 사용하므로 오피스텔 평형을 가늠할 때는 전용면적을 살펴봐야 함

2) 일례로, 김포 반도유보라2차 전용 59㎡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최대 12평에 이릅니다

[참고]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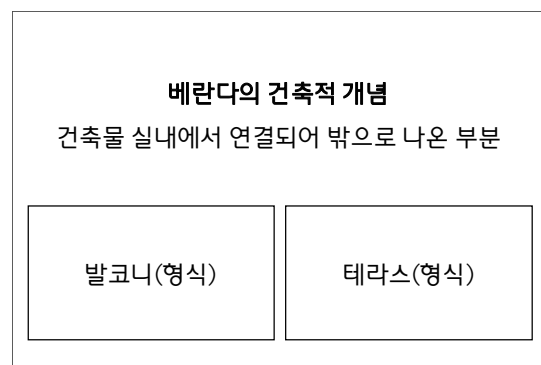
-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원래 상이한 구조물
 - 발코니는 원래 건축물 외벽에서 튀어나온 완충공간이나, 국내에서는 창호 설치가 허용되며 벽과 창호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을 포함하도록 의미가 확대
 -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흔히 지칭하는 부분은 원래 발코니에 해당
 - 베란다는 아래층 옥상 공간으로서 생긴 바닥 공간을 의미하여 계단식으로 지어진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며 바닥만 있고 위쪽으로는 구조물이 없는 형태, 테라스는 건물 외부 1층에 조성한 바닥 공간을 의미
 - 단, 건축업계에서는 베란다는 발코니와 테라스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함
- 건축법에서는 발코니, 베란다 등을 포괄하여 ‘노대(露臺)’로 표현
 - ‘노대’는 건축법상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건물 외벽에 접한 공간으로 대피 공간 등의 목적으로 설치
 - 베란다, 테라스는 건축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거주자가 발코니를 설치하고 이를 주거 공간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늘자 '05년부터 발코니를 합법화하고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포함
 - 시행령에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등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

그림3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



자료 : 국토교통부(2017), p.8

그림4 | 건축 개념에서의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자료 : 이재인(2007)

2. 발코니 관련 규정이 달라지면서 시대별로 아파트 서비스 면적에 차이

■ 1988년, 2000년 발코니 허용 면적이 확대되며 서비스 면적이 증가

- 발코니는 '80년대까지 발레 건조장소 등으로 주로 활용³⁾되다가 '86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면서 거실, 방 등을 보조하는 실내 공간의 일부로 자리매김
 - '88년대 발코니에 창문 설치가 허용되며 내부 공간화가 가능해졌고,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최대 폭도 '86년 1.2m, '88년 1.5m로 증가
 - '90년대 초 대규모 미분양을 겪은 건설사도 분양성 제고를 위해 발코니 면적을 확대
-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폭이 최대 2m까지 확대된 '00~'05년에는 '광폭 발코니'가 등장하며 이전 시기 대비 발코니 면적이 더욱 확대

■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지만 허용 면적은 감소

- 발코니 확장은 건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래 불법이었으나, '05년 부터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합법화
 - 발코니 폭을 2 → 1.5m로 축소하면서 서비스 면적은 다시 '0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
-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건설사에서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아파트 평면을 설계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용59m²에서도 3베이⁴⁾ 및 4베이가 적용되기 시작

표1 | 발코니 면적 산정 관련 「건축법」 변화

연도	건축법 규정	변화 내용
1973	노대 등의 난간벽 면적이 수직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1971년 발코니 규정이 처음 등장한 이후 아파트 건설 붐이 본격화
1986	외벽으로부터 1.2m 초과 부분에 한해 바닥면적 산입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식화
1988	공동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문구는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산입제외 범위도 1.2→1.5m로 확대
2000	채광방향 벽면 노대 등의 비탈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 2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외부 공간으로서 활용성 확보를 위해 화단 설치 시 바닥 면적 산입 제외 길이 1.5→2.0m로 확대
2005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거실, 침실 등으로 확장을 합법화하고, 비판이 많았던 바닥면적 산입 제외 길이는 2.0→1.5m로 축소

자료 : 김철희·박진철(2008), 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법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2021), p.3 재인용

3) 건설산업연구원(2004), p.8 참조

4) 전면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방과 거실의 수를 '베이'라고 하며, 4베이는 보통 방 3개와 거실이 전면에 배치되는 형태

3. 4베이 확산과 발코니 삭제로 아파트 간 서비스 면적 차이는 더욱 확대

■ 2010년대 들어 중소형 주택에서도 4베이가 확산되며 발코니 면적이 확대

- 전용 84㎡뿐 아니라 전용 59㎡에서도 4베이 구조가 확산되며 발코니를 아파트 전후면에 길게 배치하고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하는 사례가 증가
 - '00~'05년 지어진 전용 59㎡ 아파트는 2베이와 3베이가 절반씩 차지했으나 '06년부터 3베이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10년대 초반에는 4베이 비중이 절반을 돌파
- 4베이 확산으로 서비스 면적이 커지고⁵⁾ 평면이 좌우로 길어지면서, 드레스룸과 주방이 확장되고 펜트리와 알파룸이 추가되는 등 실내공간 구조도 변화

■ 서울시는 아파트 입면의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 30% 삭제'를 도입

- 서울시는 '08년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외벽의 30%에 대해 발코니 설치를 제한, 일례로 외벽 총 길이가 20m일 때 14m까지만 발코니 설치를 허용
 - 전용 60㎡ 이상에만 적용하며, 우수디자인 주택으로 선정되거나 돌출형 발코니를 가구 별로 설치하는 등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할 경우에는 발코니 설치 규제를 완화
- 반면, 타 지역에서는 3면 또는 4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도 등장
 - 3면 발코니가 도입된 킨텍스 원시티 전용 84㎡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이 최대 57㎡에 달해 일반적인 전용 84㎡ 대비 서비스 면적이 8~10평 더 많음

그림5 | 일산 킨텍스 원시티 평면도



주 : 전용 84㎡ 기준, 2016년 준공
자료 : 네이버 부동산

그림6 | 검단 대방디에트트리버파크 평면도



주 : 전용 59㎡ 기준, 2022년 준공
자료 : 네이버 부동산

5) 최권중, 진정(2015)에 의하면, 전용 84㎡에서 발코니가 2면에 배치된 4베이의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가 한 면인 2베이의 2.5배

II. 발코니의 경제학

1. 확장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

- 발코니는 화재 시 대피처가 되며, 평상 시에는 외부 소음과 외풍을 차단
 - 발코니는 화재 등 사고 시 대피 공간이 되므로 비 확장 아파트가 안전상 유리⁶⁾
 - '05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화재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 발코니가 있을 경우, 발코니를 가운데 두고 외부 창과 거실 창을 통해 이중으로 소음과 외풍이 차단되며 냉난방 효율도 증가
- 최근에는 확장 없이 발코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점차 다양화
 - 과거에는 세탁 · 건조기를 두거나 각종 집기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발코니를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카페, 서재, 작업공간, 휴식공간, 식당, 미니 바 등으로 활용 방법이 다변화
 - 인테리어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 늘어나면서 활용 아이디어가 널리 확산
 - 수 백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비를 인테리어에 대신 투자하는 형태로, 거실에 폴딩도어 등을 설치해 발코니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경우도 증가

그림7 | 발코니 활용 사례



자료 : 리빙센스, “봄하면 베란다, 베란다 200% 활용 아이디어”, 2017.3.31 블로그 게시글

6) 발코니 확장 시에도 옆집과의 경계 부분 발코니에 신축 아파트는 최소 3㎡, 기존 아파트는 2㎡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함

2. 발코니가 넓을수록 집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얼마나 오를지는 불분명

- 발코니를 포함한 총 실내면적 기준으로는 아파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음
 - 발코니가 전용면적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발코니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가치도 크게 상승
 - 전용면적 1㎡당 6백만원(평당 2천만원)⁷⁾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15 → 45㎡로 늘어나면 주택 가치는 약 1억 4,500만원 가량 증가 (표2의 매매가격 차이 참조)
 - 4베이 등 최신 평면이 도입된 신축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대비 비싼 것은 신축이라는 장점 외에도 이러한 실 사용면적의 증가도 일부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발코니가 아파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⁸⁾도 존재
- 단, 발코니는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전용면적보다는 가치가 낮음
 - 발코니의 가치는 아직 주관적 영역에 해당
 -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실 사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은 아파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음⁹⁾
 - 또한, 전용면적과 달리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는 대지지분¹⁰⁾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면적 당 가치는 전용면적보다 낮을 수밖에 없음

표2 | 아파트 발코니 유형별 평당 가격 비교

연도	Type 1 (구축 2베이)	Type 2 (신축 3베이)	Type 3 (신축 4베이+3면 발코니)
전용면적(㎡)	59	59	59
서비스면적(㎡)	15	30	45
실 사용면적(㎡)	74	89	104
매매가격(백만원)	355	430	500
평당가격(백만원/㎡, 전용면적 기준)	6.0	7.3	8.5
평당가격(백만원/㎡, 실 사용면적 기준)	4.8	4.8	4.8

주: 서비스 면적, 매매가격은 일부 지역 아파트 사례를 기초로 가정

7) 보통 아파트의 전용률이 70% 가량이므로, 전용면적 평당 2,000만원은 공급면적 기준으로는 평당 1,400만원에 해당

8) 김진유(2018), p.66 참조

9) 오피스텔에서는 복층인 경우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는 복층 바닥면적을 실 사용면적에 추가 포함해 평당 가격을 계산하기도 함

10) 아파트 각 세대가 아파트 대지에 갖는 지분을 의미하며 보통 전용면적에 비례, 씨리얼(seereal.lh.or.kr), K-GEO 플랫폼(kgeop.go.kr) 등에서 확인 가능

3. 분양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므로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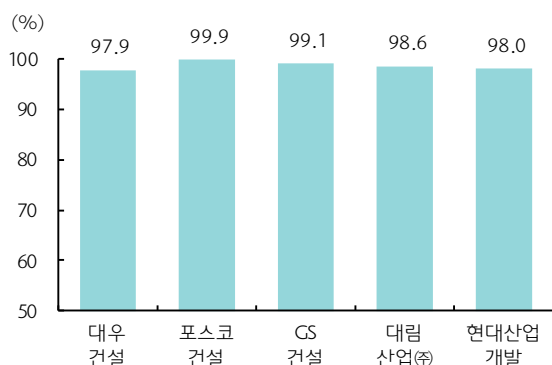
■ 최근 분양 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인 경우가 다수

- 20평대 분양주택에도 방 3개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불가피
 -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방 크기가 크게 좁아져 침대 등 가구 배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온도차 등으로 확장을 선택한 아랫집에 결로가 생기는 문제도 발생
-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서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을 유상옵션으로 선택
 - 다수의 주택 공급업체가 발코니 확장을 유상 옵션으로 책정해 해당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

■ 발코니 확장비가 역대에 이르는 경우도 등장

-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비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¹¹⁾도 늘고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 상 발코니 확장비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
 - 민간 아파트뿐 아니라 '18~'19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도 발코니 확장비가 평당 53만원부터 233만원까지 크게 차이¹²⁾
-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유상옵션 비용은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에 포함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자체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때도 유의

그림8 | 분양세대 중 발코니 확장가구 비율



주 : '15~'19년 기준
자료 : 김석기 의원실

그림9 | 검암 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평면도



주 : 전용 59㎡ 기준, 2022년 준공
자료 : 네이버 부동산

11) 부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서 전용59㎡ 분양가는 3.5~3.8억원이었으나 발코니 확장비가 8,657만원으로 분양가의 20%를 초과

12) 서울 Public News, “분양가 손 못 대는 건설사...발코니 확장비만 천정부지”, 2019.11.27. 기사 참조

III. 집 구할 때 서비스 면적도 확인할 필요

■ 일반 공개 정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유추 가능

-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전용면적과 달리 서비스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 평면도 또는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
- 다만, 부동산 중개 사이트의 아파트 평면도에 발코니 폭, 길이 등 수치가 표기된 경우가 있어 서비스 면적을 유추 가능
 - 아파트 평면구성 및 발코니 형태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면적을 추정

■ 발품 전에, 손품으로 먼저 확인할 필요

- 부동산 테크의 발전으로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중개 사이트 등의 사진·영상 자료를 통해 실내 공간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일례로 '직방'은 '17년부터 매물을 실제 방문하고 내부를 촬영한 후 'VR Home Tour' 기능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간접적인 방문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 발코니 활용과 관련한 실생활 'Tip'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의 커뮤니티 정보를 활용 가능
 - 호갱노노, 직방 등의 아파트 단지별 커뮤니티 정보, 오늘의 집 등의 인테리어 사례 등을 통해 발코니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표3 | 아파트 평면 및 발코니 형태별 발코니 면적의 추정(단위: m²)

구분		2베이	3베이	4베이
평면구성	가로길이(m)	9	10	12
	세로길이(m)	6.60	5.94	4.95
	전용면적(m ²)	59.4	59.4	59.4
발코니 형태	1면	13.5		
	2면	27.0	30.0	36.0
	3면		38.9	43.4

주: 발코니 폭은 1.5m로 일괄 가정, 1면 및 2면 발코니는 가로에 접하고, 3면 발코니는 가로 2개면과 세로 1개면에 접하는 형태
상기 수치는 대략적인 가정치로 실제 아파트 서비스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문헌]

- 건설산업연구원(2004), "아파트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건축공간연구원(2021.1),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 국토교통부(2017),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 김선영, 오찬옥(2012),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제2호, 통권 91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pp.152-162
- 김진유(2019), "아파트 발코니면적의 시계열적 변화와 내재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5집 제3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pp.59-71
- 박준영 외(2012), "2000년대 한국 아파트 단위세대의 공간구성 동향 변화",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12, No.1, pp.21-27
- 신현수, 김동훈(2018), "발코니 확장제도가 단위세대 평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8(1)
- 이재인(2007),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시공사
- 최권종, 진정(2015),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아파트 평면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26, No.5, 한국주거학회, pp.123-131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